

이사회운영 규정

시행일 2014.01.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알테오젠(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사회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일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감사의 출석 등)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규정 제16조에 의해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의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의 종료 후 도래하는 정기이사회에 출석,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규정 제21조에 의해 감사는 감사규정 제21조의 각 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소집권자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 ④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는 의장으로 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 ⑤ 감사규정 제21조의 각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동시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사외이사는 제11조제1호 라목, 바목, 사목 및 하목, 제4호 나목의 사항이 부의되는

이사회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에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⑥ 이사회에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법 및 정관상 결의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정관 제23조)
- 나.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7조)
- 다. 대표이사 등의 선임(상법 제389조, 정관 제37조)
- 라. 신주의 발행사항 결정(상법 제416조, 정관 제9조의2와 제10조)
- 마.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 바.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정관 제18조)
- 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의2, 정관 제19조)
- 아. 사채의 발행(상법 제469조)
- 자.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정관 제3조)
- 차.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 카.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상법 제341조, 정관 제14조)
- 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상법 제340조의3, 정관 제11조)
- 파. 우리스주매수선택권 부여(정관 제12조)
- 하.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상법 제374조)
- 거.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 너. 회사의 합병 및 분할(상법 제522조와 제530조의3)
- 더.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 러.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정관 제15조)

2.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나. 신규사업의 추진
- 다. 중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3. 자산에 관한 사항

- 가. 중요한 계약의 체결

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결손의 처분

라. 장기 자금의 차입

4. 기타

가. 주요한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

나. 이해관계자거래에대한통제규정에 규정된 사항

다.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이사회 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추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 결의를 경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임시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신속 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 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의 원본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6조 (여비교통비)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액수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이사회운영 규정

-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8조 (개정이력)

개정번호 (Revision No.)	시행일자 (Effective Date)	개정사유 (Reason of Revision)	개정자 (Revised By)
1	2014년 1월 1일	제정	박종윤
2	2025년 12월 26일	개정	김항연